

제 561 호
1976. 6. 25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 조 례

제 1049 호 : 서울특별시저 항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3

제 1050 호 : 서울특별시법부녀사업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 규 칙

제 1595 호 :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1 조에 관한처분
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 4

제 1596 호 : 서울특별시식 품위생적부검사시행규칙..... 7

◎ 고 시

제 144 호 : 가토및공원명칭계 (개) 정고시..... 8

제 148 호 : 서울특별시지방문화계지정고시..... 10

-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6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조례제 1049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의 무직공무원조정수당지급구분

구 분	2 급	3 급 갑 류	3 급 을 류
월 수당지급액	200,000 원	180,000 원	160,000 원

부 칙

이 조례는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관장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6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조례제 1050 호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관설치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서울특별시부녀사업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조제 1항중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강당사용료 : 1회 (3시간) 사용료는 3,000 원으로하되 1시간 초과시마다 1,000 원씩 가산한다

(사용은 매일 10:00-20:00 이
내로서 공휴일은 제외함)

부 칙

이 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1
조에 관한 처분규정시행규칙중 개정규
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6년 6월 25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595 호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1 조에관한처분규정시행규칙중
개 정 규 칙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수사업법제 31 조
에 관한 처분규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수사업법제 31 조에

관한 처분규정 시행규칙을 「서울
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 31 조중에
관한 처분요령 시행규칙」이라 한
다.

제 1 조제 2 조제 3 조 및 제 4 조중
「규정」을 각각 「요령」이라
하며 「제 1 조중 제 447 호」를
제 532 호로 한다.

제 3 조제 2 호중 신고의 은폐 다음
에 「신고의 지연」을 삽입한다.
제 5 조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두
하여 진술 또는 변명하지 아니
하거나 서면으로 확실한 증거를
제출키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중건의 규정 (교통부훈령제 477 호
및제 484 호) 에 위반된 사항으로
서 집행되지 아니한 것은 중건
의 규정 및 규칙에 의하여 처
분 또는 집행한다.

별표 1 법 령 위 반 처 분 기 준				
위반사항	위 반 내 용	관계법령	처분내용	비 고
매 연	1. 링겔만스모 크자도 3도이상 2. 링겔만스모 크자도 4도이상	도로운송차량법제43조	경비지시및 경고 운행정지 3일과 정지지시 병행	1. 타기관에서 적발이참및 신고된 차량은 가. 농도가 명확치 않은 것은 매연 3도이하 일산화탄소 6.9%이하로 간주하여 정비지시 (단 정비지시불이행시는 3일간 운행정지 처분함)
일산화탄 소	3. 측정메타 5.6-6.9% 4. 측정메타 7%이상	"	경비지시 운행정지 3일과 정비지시 병행	나. 공인기관의 정비증거가 확실한 것은 경고처분 다만 위반한날로부터 1년이내에 계속하여 3회까지 위반할 때에는 경고처분하고 4회위반한 때에는 5일간 운행정지 (직영형태의 업체도 포함)
소정기일내에사고발생에 대한보고 불하지	5. 신고이행 사고발생시각으로부터기산 3시간이내 (경상 중상)	자동차운수사업법 17조	불 문	

위반사항	위 반 내 용	관계법령	처분내용	비 고
아니하거나 신고의은폐 신고외지연 또는허위 보고를 할때	6. 신고지연, 경상이하 24시간 이내, 중상이 12시간이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7 조	운행정지 1일	
	7. 신고음폐 경상이후 24시간이후 중상이상 12시간이내	"	운행정지 3일	
개인택시 면허를 득한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케 하였을때	8. 1회위반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1 조	운행정지 5일	1년이내에 계속하여 위반하였을 경우
	9. 2회위반시	"	운행정지 10일	
	10. 3회위반시	"	운행정지 15일	
	11. 4회위반시	"	운행정지 20일	
	12. 5회위반시	"	면허취소	
사업일부 정지위반 행위를 할때	13.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1 조등에 관한 처분 요령 별표 1 각항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1 조등에 관한 처분요령에 의한 정지일수	사업일부정지처분요령 사업일부정지는 법령위반차량 1대당 1대의 기준으로 소속회사에서 지정하는 차량에 처분한다. 다만 지정하지 아니할때는 위반차량 다음 등록번

위반사항	위 반 내 용	관계법령	처분내용	비 고
				호차량에 처분하고 다음순 위번호가 없을 경우에 소 속초번등록차량에 처분한다.
“별표2” 경 각 기 준				
위 반 사 항	위반내용	관계법령	처분내용	비 고
직영형태로 확인 된업체로서 법령 위반차량중 정지처분에 될때	1.1 회 2.2 회 부터 (1년 이내)	처분요령 제 7 조	경 고 2 일운행 정지	특별단속기간중 적발분과 매연 4 도 일산화탄소 7 % 이상 및 교통사고차량은 제외함.
<p>서울특별시 식품위생적부경사시행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6년 6월 25일</p> <p>◎서울특별시규칙제 1596 호</p> <p>서울특별시식품위생적부경사 시 행 규 칙</p> <p>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p>		<p>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23 조제 2 항의 규정제 의거 허가식품 의 품목별 내용을 확인 시험하도 록 필요한 조건을 부함으로서 자 율적인 품질관리와 부정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미연방지하여 시민보 전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허가조건) 식품제조허가에는 “허가받은 식품은 매품목마다 최 초생산품에 대한 확인시험을 받아</p>		

시판하여야 한다. *는 조건을
부차하여야 한다.

제 3 조 (시험기관) 서울특별시 위생
연구소를 확인 시험기관으로 한다.

제 4 조 (시험기준) 시험기관은 생산
제품이 법제 3 조 내지 제 10 조의
규정에 적합여부를 확인 시험한다.

제 5 조 (확인시험)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식품의 최초생산
품에 대한 확인시험은 당해식품의
적량을 첨부 의뢰하게 한다.

제 6 조 (확인시험대상식품) 별표의
임종으로 허가받은 제조업소에
제조된 최초생산품에 한한다.

제 7 조 (확인시험 및 성적통보) 확
인시험을 의뢰받은 시험기관은
15일이내에 확인시험을 완료하고
성적서 2 통을 작성하여 1 통은
의뢰자에게, 1 통은 검체와 함께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확인시험결과조치) 확인시험
한 식품이 부적합 할 때에는 시판
을 금지하고 재시험을 받도록
한다.

제 9 조 (수수료) 시험수수료는 서울
특별시험위생연구소 재수수로 징수
조례의 규정에 준한다.

제 10 조 (검체외보존) 연구소장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식품은
최소 3개월간 검체의 일부를 보존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소장이
판정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규칙 시행당시 이미
허가된 제조업소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44 호

가 로 및 공 원 명 칭
제 (개) 정 고 시

가 로 및 공 원 명 칭 을 아 래 와 같 이
제 정 또는 개 정 하였 기 고 시 한다.

1976.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출

다 목					
1. 가 로					
현명칭	구 간	하 원	연 각	계정 또는 계정명칭	비 고
방사2호선	하월곡동 (월암교) ~ 장위동~석림동~죽당천 ~동2로~옥사앞	35 m	3,700m	화랑로	신규계정
방사4호선	삼일교가마장동종점~ 장안정~군자교~천호대 교~천호동	30~50	9,400	천호대로	"
방사7호선	회현동~남산3호터널~ 이배원동~잠수교~반포동	18~35	9,440	반포대로	"
영동1로	제3한강교남단~역삼동 211	50	3,900	강남대로	개 정
영동2로	압구정동 211·16~역삼 동 55	30	4,500	남 1 로	"
영동3로	압구정동 170~도곡동 145	40	4,300	남 2 로	"
영동4로	압구정동 22·26~도곡동 116·123	25	4,100	남 3 로	"
영동5로	철담동 249·250~대치동 158·247	35	3,100	남 4 로	"
영동6로	영동교남단~대치동 78	70	2,900	영동대로	"
호 당 로	제3한강교남단~압구정 동~철담동	30	5,700	압구정로	"
	제3한강교인리제인저~ 영동1지구1공구 6/30 부덕	30	2,200	잠원 1 로	신규계정

현명칭	구 간	폭 원	면 적	지정명칭	비 고
호 당 로	영동1지구1공구158-94부락~반포아파트~동작로교차점	30m	3,550㎡	잠원2로	신규개정
	영동1지구1공구79부락~영동1지구1공구304부락	30	560	동작로 (현행동작로연장)	현동작로 구간이 연장(연장)됨
	갈성교 ~ 성내교	50	4,500	잠실로	현잠실로(삼전동~석촌동~풍납동)는 없는 도로임으로 명칭폐지

2. 공 원

현 명 칭	개 정 명 칭	비 고
의 주 로 공 원	서 소 문 공 원	중구의주로 2가 16번지

◎서울특별시고시제 148 호

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지정고시

문화재보호법제 54조의 2 및 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제 6조 등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한다.

1976년 6월 일

서울특별시장

<지 정 목 목>

1. 종별 및 지정번호: 서울특별시 지방유형문화재제 33 호

2. 문화재명: 홍지문 및 방춘대성

3. 소재지

홍지문: 서울특별시종로구홍제동산

방춘대성: 과천익성 - 서대문구홍은동산일원

우학익성 - 종로구홍제동산일원